

제26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2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2월 20일  
전문위원 정 우 숙

#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0 - 11
- 나. 제 출 자: 이종숙 의원 외 9명
- 다. 제출일자: 2020년 2월 10일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2월 17일

### 2. 제정이유

임신, 출산, 육아와 기타 사유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진입을 유도하여 자아실현 및 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(안 제3조)
- 라.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에 대한 규정(안 제4조)
- 마. 구청장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사안 규정(안 제5조)
- 바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6조)
- 사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방법 규정(안 제7조)

- 아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근거 규정(안 제8조)
- 자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 규정(안 제9조)
- 차. 부칙을 통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제2항 개정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」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- 나. 합      의: 가족정책과
- 다. 기      타: 입법예고(2020. 2. 11. ~ 2. 15.)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함

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1)[안 제1~2조]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
- 2)[안 제3조] 구청장의 책무 규정
  -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
  -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 및

각종 지원책에 대해 홍보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함

- 중앙부처(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) 및 서울특별시의 기본계획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

### 3)[안 제4조] 예산편성 등

-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 편성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 사용 가능

### 4)[안 제5조] 구의회 제출

- 정기적인 실태조사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

### 5)[안 제6조]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

### 6)[안 제7조]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할 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통해 지원

### 7)[안 제8조] 업무의 위탁

-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가능

### 8)[부칙 안 제2조]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 제2항 개정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강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 중 결혼, 임신·출산, 육아, 자녀교육, 가족돌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
- 『2019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』(통계청)을 살펴보면, 기혼여성 884만 4천명 중 비취업여성은 336만 6천명이며,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69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8천명 감소하였고,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1.3%하락하였음
-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계획을 추진하며 행정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 3조에 규정하였음
-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점 늘어난다면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, 일자리경제과 등 취·창업 관련 부서와 소관 위탁기관 등과 연계·협력하여 추진 할 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### ※ 경력단절 여성 현황(출처: 통계청)

연도 \ 대상	15세~54세 기혼여성	취업여성	비취업여성			비고
			계	미취업여성	경력단절여성	
2018년	9,005	5,548	3,457	1,610	1,847	
2019년	8,844	5,478	3,366	1,667	1,699	

**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(약칭:경력단절여성법)**

**제3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
2.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
3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
4.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9. 11. 26.> [시행일 : 2020. 5. 27.]

## □ 근로기준법

**제11조(적용 범위)**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(家事)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연도별 시행계획 등)** 시장은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## 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

**제19조(경제활동 참여촉진)**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,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